

## 연금시장리뷰 44호

은퇴빈곤층(Retire Poor)의 추정과 5대 특성

- 은퇴 준비 안 된 가구 100만 이상 <첨부자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 정민 연구원 (02-2072-6220, chungm@hri.co.kr)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 은퇴빈곤층(Retire Poor)의 추정과 5대 특성

### - 은퇴 준비 안 된 가구 100만 이상

#### ■ 은퇴빈곤층의 정의

은퇴빈곤층(Retire Poor)이란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어 가난하게 사는 고령가구'로, 은퇴부유층(Retire Rich)는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적정생활비보다 많아 여유롭게 생활하는 고령가구'로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은퇴빈곤층은 60 세 이상 은퇴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주관적인 최소생활비 미만이고, 소득 인정액이 법정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추계하였다. 그리고 은퇴부유층은 소득 인정액이 주관적인 적정생활비 이상이고, 소득액이 법정최저생계비의 5 배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규모를 추정하였다.

#### ■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통계적 특성

2010 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계 분석한 결과, 첫째, 2010 년 현재 은퇴빈곤층은 101.5 만 가구로서, 고령은퇴가구 (264.3 만 가구)의 38.4%(약 10 명 중 4 명)에 달하는 반면, 은퇴부유층은 3.2%인 8.4 만 가구에 불과하다.

둘째, 단독가구(독거노인)의 56.6%가 은퇴 빈곤층에 해당한다. 은퇴한 60 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102.4 만 단독가구 중 빈곤층은 58.0 만 가구(56.6%)에 달하며, 부유층은 1.2 만 가구(1.2%)에 불과하다.

셋째, 은퇴빈곤층의 자산의 대부분은 거주관련 자산에 묶여 있다. 은퇴 빈곤층의 평균자산 7 천만 원 중 거주 주택과 전월세 보증금은 76.7%를 차지하여 처분 가능한 기타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 은퇴 부유층은 평균 자산 15 억 7 천만 원 가운데 거주 관련자산이 47.5%에 불과하여, 자유롭게 처분하여 소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넷째, 은퇴자 중에는 주택을 소유하고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전체은퇴빈곤층의 51.7%나 된다. 반면, 은퇴 부유층 가운데 유주택 가구 비중은 96.4%에 달한다.

다섯째, 은퇴빈곤층은 금융자산이 매우 빈약하고 그 중 개인적으로 준비한 노후자금(사적연금)의 평균은 61 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은퇴 부유층의 사적연금은 2,200 만원으로 은퇴빈곤층보다 36 배나 많다.

#### ■ 시사점과 과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노령가구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통합의 잠재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은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은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연금과 즉시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은퇴 후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이 은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

## I. 은퇴 빈곤층(Retire Poor)의 정의

### ○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 부각

- 2011 년 현재 한국의 평균수명은 80 세로서, 60 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사망할 때까지 20 년 이상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생활해야 함
- (개인 차원) 은퇴를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적어도 최소생활비를 확보해야 함
  - 적정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은퇴노인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이며, 최소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은퇴노인이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함
- (국가 차원) 한국은 2000 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 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 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은퇴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시급
  - 아직 은퇴하지 않은 국민들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적연금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
  - 최소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한 고령가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공부조제도를 촘촘하게 설계

### ○ (정의) 은퇴빈곤층(retire poor)이란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어 가난하게 사는 고령가구'이며, 은퇴부유층(retire rich)란 '은퇴 후 소득인정액이 적정생활비보다 많아 여유롭게 생활하는 고령가구'를 뜻함

- 고령은퇴자에게 있어서 적정생활비와 최소생활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음
  - 소득 인정액은 보건 복지부에서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를 선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간 현재 소득과 현재 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
  - 월소득 인정액 = { 연간 가처분 소득 + ((총자산-총부채)\*2% } /12
  -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5%로 정했지만 본 연구에서 근로 소득 공제와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2%로 정함
-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은퇴노인이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
  - '2010 가계금융조사' 설문문항 33 번 "노후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기입됨
- 적정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은퇴노인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
  - '2010 가계금융조사' 설문문항 34 번 "노후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기입됨

○ (추정 방법) 통계청의 '2010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을 추정

- 은퇴빈곤층 가구주가 만 60 세 이상 은퇴 또는 무직자로서 ①소득인정액이 최소생활비 미만이고 ②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 여기서 주관적 기준(최소생활비)과 객관적 기준(최저생계비)을 모두 적용하여 은퇴빈곤층을 추계
- 은퇴부유층은 가구주가 만 60 세 이상 은퇴 또는 무직자로서 ①소득 인정액이 적정생활비 이상이고 ②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 배 이상인 가구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정의>

	은퇴빈곤층(Retire Poor)	은퇴부유층(Retire Rich)
정의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최소생활비 보다 적어 가난하게 사는 고령가구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적정생활비 보다 많아 여유롭게 생활하는 고령 가구
가구주 연령	만 60세 이상	좌동
가구주 직업	무직, 은퇴자	좌동
가처분소득	소득 인정액 < 최소생활비 AND 소득 인정액 <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 ≥ 적정생활비 AND 소득 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5배

II.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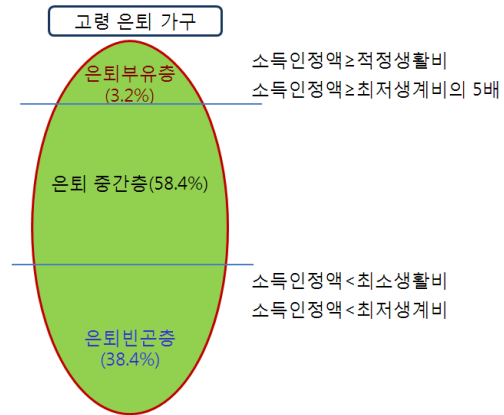
○ (첫째) 2010 년 현재 은퇴빈곤층은 101.5 만 가구로서, 고령은퇴가구 (264.3 만 가구)의 38.4%(약 10 명 중 4 명)에 달하는 반면, 은퇴부유층은 3.2%인 8.4 만 가구에 불과함

- 2010 년 현재 고령은퇴가구 264.3 만 가구 중 은퇴빈곤층은 101.5 만 가구로 38.4%에 달하는 반면, 은퇴부유층은 8.4 만 가구로 3.2%에 불과
  - 은퇴빈곤층과 은퇴 부유층을 제외한 '은퇴 중간층'은 154.4 만 가구로 고령은퇴가구의 58.4%를 차지함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 추계>

만 60 세 이상 은퇴가구	264.3 만 가구 (100.0%)
은퇴 빈곤층	101.5 만 가구 (38.4%)
은퇴 부유층	8.4 만 가구 (3.2%)
은퇴 중간층	154.4 만 가구 (58.4%)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 분포도>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

주 : '은퇴 중간층'은 은퇴빈곤층에도 은퇴부유층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 이 최소생활비보다는 많으나 적정생활비보다는 적은 가구로 정의함

○ (둘째)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은퇴빈곤층의 비중이 높고, 노인 부부 이외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일수록 은퇴부유층 비중이 높음

- 은퇴한 60 세 이상 노인 1 인으로 구성된 102.4 만 단독가구 중, 은퇴빈곤층은 56.6%인 58.0 만 가구인 반면, 은퇴부유층은 1.2%인 1.2 만 가구에 불과함

- 노인 혼자 사는 은퇴빈곤층의 월 소득인정액은 29.2 만원으로 최소생활비 57.7 만원의 50.6%에 불과. 또한, 소유하고 있는 자산도 적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가처분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음
- 특히 가처분소득이 10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7.0 만 가구의 경우, 부양책임을 지지 않는 비동거 가족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측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비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수령 가능)
- 한편 은퇴부유층인 노인 단독가구의 가처분소득 188.6 만원은 적정생활비 247.8 만원의 76.1%에 불과하나, 은퇴 빈곤층 보다 보유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이 384.3 만원으로 적정생활비의 1.6 배에 이룸

<가구원수별 분포>

(단위: 만가구, 만원)

가구원수	고령 은퇴 가구 수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가구 수	최소 생활비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 소득	가구 수	적정 생활비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 소득
노인 단독 가구	1024	580 (56.6%)	57.7	53.3	292	24.5	12 (1.2%)	2478	53.3	384.3	188.6
노인 부부가구	1036	313 (30.2%)	90.3	90.7	47.6	29.8	4.1 (4.0%)	361.5	90.7	663.5	371.3
기타 가구	583	122 (20.9%)	90.4	109.8	52.4	37.2	3.1 (5.3%)	339.5	127.1	829.1	631.7
합계	2643	1015 (38.4%)	71.8	71.8	37.7	27.7	8.4 (3.2%)	337.9	96.5	673.9	425.4

자료 :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계

주 : 가구수의 괄호안은 고령은퇴가구수 대비 비중임

가처분소득,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 소득인정액은 월평균임

기타가구는 '노인부부와 가구원', 혹은 '노인 1인과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 103.6 만 노인 부부가구 중에서는 30.2%인 31.3 만 가구가 은퇴빈곤층이고 4.0%인 4.1 만 가구는 은퇴부유층임

- 은퇴빈곤층인 노인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47.6 만원에 불과하여, 최소생활비인 90.3 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가처분소득이 20 만원 미만인 부부가구는 6.5 만 가구

- 은퇴부유층인 노인 부부가구의 가처분소득 371.3 만원은 적정생활비 361.5 만원보다 많고 소득인정액 663.5 만원은 적정생활비 보다 1.8 배 많음

- '노인 부부와 가구원', 혹은 '노인 1인과 가구원'으로 구성된 58.3 만 '기타 가구' 중에서는 은퇴빈곤층 비중이 가장 작고 은퇴 부유층 비중이 가장 높음

- 은퇴빈곤층 12.2 만 가구로 20.9%이며 은퇴부유층은 3.1 만 가구로 5.3%를 차지함

○ (셋째) 은퇴빈곤층은 은퇴부유층에 비해 자산 대부분이 거주관련 자산에 편중되어 있음

- (은퇴빈곤층) 평균 자산 7,117 만원 중 부동산자산은 5,794 만원으로 81.4%차지하고, 금융자산은 1,259 만원으로 17.7%차지함. 특히, 거주관련 자산이 자산의 76.7%로 편중되어 있고 평균 부채는 1,105 만원으로 부채 비율이 15.5%임
  - 자산이 5 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은퇴빈곤층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총자산 11 억 9,670 만원 중 8 억 4,000 만원이 거주주택에 묶여 있음
  - 한편 평균 부채는 3 억 9,614 만원으로 부채 비율이 33.1%이고 대출 잔액은 2 억 7,471 만원으로 매월 이자부담이 114.5 만원(연이율 5% 기준)에 이룸. 은퇴 준비 미흡과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함 (11 쪽 사례 1 참조)
  - 자산이 1 억~3 억원인 은퇴빈곤층은 평균 자산 1 억 5,863 억원 중 74.8%인 1 억 1,863 만원이 거주주택에 묶여 있음

※거주관련자산은 거주주택과 전월세 보증금의 합을 의미

<은퇴빈곤층의 자산·부채 구성>

(단위: 만원, %)

구 분	총 자산						부채 총액	대출 잔액	임대 보증금	순자산
	부동산 자산	거주 주택	금융 자산	전월세 보증금	사적연금					
1천만원미만	221 (100.0)	35 (15.8)	33 (14.9)	168 (76.0)	86 (38.9)	9 (4.1)	116 (100.0)	114 (98.3)	0 (-)	105
1 억 미만	4,038 (100.0)	2,742 (67.9)	2,405 (59.6)	1,264 (31.3)	878 (21.7)	36 (0.9)	261 (100.0)	225 (86.2)	36 (13.8)	3,777
3 억 미만	15,863 (100.0)	13,272 (83.7)	11,863 (74.8)	2,433 (15.3)	591 (3.7)	140 (0.9)	1,860 (100.0)	1,118 (60.1)	740 (39.8)	14,003
5 억 미만	35,125 (100.0)	30,833 (87.8)	23,833 (67.9)	3,929 (11.2)	1,375 (3.9)	685 (0.2)	6,110 (100.0)	3,885 (63.6)	2,208 (36.1)	29,015
5 억 이상	119,670 (100.0)	114,000 (95.3)	84,000 (70.2)	5,186 (4.3)	0 (-)	87 (0.1)	39,614 (100.0)	27,471 (69.3)	12,143 (30.7)	80,056
전체	7,117 (100.0)	5,794 (81.4)	4,866 (68.4)	1,259 (17.7)	593 (8.3)	61 (0.9)	1,105 (100.0)	759 (68.7)	344 (31.1)	6,012

자료: 통계청 '2010 년 가계 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 (은퇴부유층) 은퇴 부유층의 평균 자산은 15 억 7,766 만원이고 평균 부채는 8,705 만원으로 부채 비율이 5.5%에 불과함. 또한, 거주 관련 자산의 비중은 47.5%에 불과함

- 자산이 5 억원 이상인 은퇴부유층의 경우, 평균 자산 17 억 2,054 만원 중 15.2%인 2 억 6,087 만원이 수익을 낚는 금융자산임. 평균 부채 9,086 만원 중 이자부담 이 없는 임대보증금이 7,436 만원으로 총부채의 81.8%에 이르러, 충분한 이자·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을 확보하고 있음
- 자산이 1 억~3 억원인 은퇴부유층의 경우, 평균 자산 2 억 2,104 만원 중 수익을 낚는 금융자산이 7,854 만원(35.5%)임.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 이자와 배당으로 소득을 얻음
- 자산이 1 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부유층인 가구의 경우, 평균 자산 6,226 만원 중 98.8%인 6,150 만원이 금융자산으로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을 확보하고 있음 (9 쪽 사례 2 참조)

**< 은퇴부유층의 자산·부채 구성 >**

(단위: %, 만원)

구 분	총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사적연금	부채 총액	대출잔액	임대보증금	순자산
		부동산 자산	거주 주택							
1천만원미만	-	-	-	-	-	-	-	-	-	-
1 억 미만	6,226 (100.0)	0	0	6,150 (98.8)	0	100 (1.6)	0	0	0	6,226
3 억 미만	22,104 (100.0)	13,500 (61.1)	10,000 (45.2)	7,854 (35.5)	3,000 (13.6)	114 (0.5)	10,650 (100.0)	10,000 (93.9)	500 (4.7)	11,454
5 억 미만	36,772 (100.0)	27,000 (73.4)	20,333 (55.3)	9,299 (25.3)	1,000 (2.7)	784 (2.1)	3,333 (100.0)	1,667 (50.0)	1,666 (50.0)	34,439
5 억 이상	172,054 (100.0)	142,680 (82.9)	81,351 (47.3)	26,087 (15.2)	273 (0.2)	2,391 (1.4)	9,086 (100.0)	1,582 (17.4)	7,436 (81.8)	162,969
전체	157,766 (100.0)	130,416 (82.7)	74,677 (47.3)	24,337 (15.4)	393 (0.2)	2,200 (1.4)	8,705 (100.0)	1,836 (21.1)	6,803 (78.2)	149,061

자료: 통계청 '2010 년 가계 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 (넷째) 은퇴자 중에는 주택을 소유하고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전체 은퇴빈곤층의 51.7%나 되며, 은퇴 부유층 가운데 유주택 가구 비중은 96.4%에 달함

- 고령 은퇴자 중 주택을 소유한 180.6 만 가구 가운데 빈곤층이 52.5 만 가구로서 전체 은퇴빈곤층의 51.7%를 차지함



-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 은퇴빈곤층은 무주택 가구 비율이 48.3%인 반면 은퇴부유층은 3.6%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계층 간의 순자산 격차는 벌어짐
- 83.7 만 무주택 가구 중 49.0 만 가구인 58.5%가 은퇴빈곤층이고, 0.3 만 가구인 0.4%가 은퇴부유층임
  - 1 주택 가구 163.5 만 가구 중에서는 은퇴빈곤층이 51.0 만 가구로 31.2%이고, 은퇴부유층이 6.2 만 가구로 3.8% 차지함
- 한편 17.1 만 다주택 가구 중 8.8%인 1.5 만 가구가 은퇴빈곤층이고, 은퇴부유층은 1.9 만 가구로 11.1%에 불과함
  - 은퇴 빈곤층의 다주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6.6 만원에 불과한 반면 은퇴부유층은 667.0 만원에 이룸

**< 주택 소유별 분포 >**

(단위: 만가구, 만원)

주택 소유별	고령 은퇴 가구 수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가구 수	최소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가구수	적정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무주택	83.7	49.0 (48.3%)	62.2	65.5	35.2	32.7	0.3 (3.6%)	316.7	78.2	493.8	324.7
1주택	163.5	51.0 (50.2%)	79.4	77.4	41.1	24.5	6.2 (73.8%)	341.7	95.7	686.3	437.0
다주택	17.1	1.5 (1.5%)	122.2	82.4	6.6	-21.9	1.9 (22.6%)	327.3	105.2	667.0	403.4
합계	264.3	101.5 (100%)	71.8	71.8	37.7	27.7	8.4 (100%)	337.9	96.5	673.9	425.4

자료 :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 (다섯째) 은퇴빈곤층은 평균 자산대비 사적연금 비중이 은퇴부유층보다 낮음(※ 5 쪽과 6 쪽의 표 참고)

- (은퇴빈곤층) 은퇴빈곤층의 평균 사적연금은 61 만원으로 평균 자산 대비 0.9%에 불과함

- 자산이 5 억원을 초과한 은퇴빈곤층은 사적연금은 87 만원으로 평균 자산 대비 0.1%에 불과함
  - 자산이 1 억~3 억원인 은퇴빈곤층은 사적연금이 평균 자산의 0.9%인 140 만원에 불과해 노후 준비가 미흡함
- (은퇴부유층) 은퇴 부유층의 사적연금은 2,200 만원으로 은퇴빈곤층의 61 만원보다 36 배나 많음. 그러나 자산대비 사적연금 비중이 1.4%로 높은 수준은 아님
- 자산이 5 억원을 초과한 은퇴부유층의 사적연금은 2,391 만원으로 은퇴빈곤층보다 29.5 배나 많음
  - 자산이 1 억~3 억원인 은퇴부유층의 경우, 사적연금 114 만원으로 평균 자산의 0.5%로 은퇴 부유층에서 가장 낮음
  - 자산이 1 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부유층인 가구의 경우, 사적연금도 총 자산의 1.6%인 100 만원으로 은퇴 빈곤층보다 3 배 많음

### Ⅲ. 시사점과 과제

#### ○ (시사점) 대부분의 은퇴빈곤층은 나이가 많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고 소유한 자산도 별로 없음

- 대부분의 은퇴빈곤층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야함
  - 자산이 있어도 자산 운용에 실패해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도 소수 존재 함. 은퇴부유층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함
- 은퇴빈곤층은 과도한 부채로 생활비 조달이 어렵고 노후 준비도 부족하여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음
-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노령가구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통합의 잠재 위협요인으로 작용
  - 은퇴빈곤층의 방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필요

#### ○ (단기 과제) 현재 은퇴빈곤층(Retire Poor)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연금과 즉시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은퇴 후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주택 연금) 은퇴자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집이 있어도 꾸준한 월 소득이 없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함
  -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주택으로 자산이 묶여 자산소득이 없는 은퇴빈곤층을 위해 주택 연금이 필요함
  - 최근 부동산 시장의 매매 부진과 자녀에게 의지하고 않고 독립적인 경제권을 유지하려는 사회 현상으로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즉시연금 가입) 은퇴부유층도 사적 연금 저축액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사적 연금 가입이 필요
  - 일정 자산을 가진 은퇴한 세대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즉시연금 가입이 필요

- 셋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수정이 필요
  -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노인 빈곤층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임
  - 소득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비수급 노인 빈곤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넷째 (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 은퇴 후 재취업의 기회를 가져 꾸준한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노인들을 위한 '소일거리' 창출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노인 취업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은퇴자를 채용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노인의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노인 취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함

○ (장기 과제)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이 은퇴빈곤층(Retire Poor)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이 필요함

- 첫째 (사적연금 활성화) 자산이 적어도 사적연금을 통해 은퇴준비를 열심히 한 은퇴부자를 보면 사적 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됨. 이러한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사적연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크게 늘려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금융사는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길러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을 제공
  
- 둘째 (정년 연장)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함
  -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은퇴빈곤층을 줄이고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

정 민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사례>

[사례 1] 자산은 많으나 자산소득이 적고 원리금 부담이 커서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한 A 씨

- 만 63 세로 수도권에 사는 A 씨는 총자산 13 억 7,060 만원으로 그 중 13 억원거주 주택으로 묶여 있어 임대소득도 없어 매달 경상소득이 10 만원에 불과. 대출잔액은 3 억

7,000 만원으로 매달 이자로만 192 만원을 지불하고 재산세도 납부하면서 월평균 비소비지출이 254.5 만원에 이르러 가처분소득이 -244.5 만원을 기록 (A 씨의 최소생활비는 100 만원, 적정생활비는 200 만원)

**[사례 2]** 자산은 적지만, 수익을 낚는 금융자산을 통해 은퇴부유층이 된 B 씨

- 수도권에 사는 만 73 세 B 씨는 총자산 6,226 만원을 수익을 낚는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특히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사적연금에 100 만원을 투자. 여기에 공적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타 소득원을 더해 월 가처분소득이 271.9 만원에 이릅니다 (B 씨의 최소생활비는 70 만원, 적정생활비는 100 만원)

**[사례 3]** 의료비 때문에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한 C 씨

- C 씨는 급박하게 의료비를 조달하기 위해 1 억 5,000 만원을 대출받음. 매달 100 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 가처분소득이 9.1 만원에 불과함 (C 씨의 최소생활비는 150 만원, 적정생활비는 200 만원)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자산구조>**

(단위 : 만원)

		A씨(은퇴빈곤층)	B씨(은퇴부유층)	C씨(은퇴빈곤층)
자 산 부 채	총자산	137,060	6,226	16,790
	부동산	136,000	0	16,640
	주택	130,000(1채)	0	16,000
	금융자산	1,010	6,150	150
	사적연금	0	100	0
	총부채	37,000	0	15,224
	대출잔액	37,000	0	15,000
	순자산	100,060	6,226	1,566
소 득 지 출	월평균 경상소득(A)	10	273.2	150.0
	월평균 비소비지출(B)	254.5	11.7	140.9
	이자	192.0	0	100.0
	월평균 가처분소득(A-B)	-244.5	261.5	9.1
	월 소득인정액	-77.7	271.9	11.7

자료 :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별첨 1>**

○ (연령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빈곤층의 비중이 높고 은퇴부유층의 비중은 낮음

- 고령은퇴가구 대비 은퇴빈곤층의 비중은 60 대, 70 대, 80 대 이상에서 각각 25.7%, 44.7%,

52.5%인 반면, 은퇴부유층은 각각 5.3%, 2.5%, 0.4%임

- 이는 60 대가 국민연금(1988 년 도입), 개인연금(1984 년 도입) 등 다양한 은퇴 준비 방법을 활용한 반면, 70 대 이상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모든 연령대에서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월 소득인정액과 월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매우 큼

- 60 대 내에서도 은퇴빈곤층의 월 소득인정액은 43.1 만원에 불과한 반면 은퇴부유층은 688.1 만원에 이르러, 그 격차가 16.0 배에 이룸. 80 대 이상에서의 격차는 26.8 배로 가장 큼
- 은퇴 빈곤층에서는 60 대가 70 대 이상보다 소유한 자산이 높아 소득 인정액이 가장 높은 반면, 은퇴 부유층에서는 80 대의 가처분 소득이 94.2 만원에 불과하지만 소득인정액이 849.8 만원으로 가장 높음
- 60 대 내에서도 은퇴빈곤층의 월 가처분 소득은 27.2 만원에 불과한 반면 은퇴부유층은 454.8 만원으로 격차가 16.7 배로 가장 크고 80 대 이상에서의 격차는 3.5 배로 가장 작음

**<연령별 분포>**

(단위: 만가구, 만원)

연령	고령 은퇴 가구 수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가구 수	최소 생활비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 소득	가구 수	적정 생활비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 소득
60 대	104.2	26.8 (25.7%)	83.3	77.3	43.1	27.2	5.5 (5.3%)	353.6	103.5	688.1	454.8
70 대	120.1	53.7 (44.7%)	71.3	70.5	37.4	28.2	2.5 (2.1%)	321.8	87.5	626.6	422.6
80 대 이상	40.0	21.0 (52.5%)	58.0	67.8	31.7	27.2	0.4 (1.0%)	266.7	78.2	849.8	94.2
합계	264.3	101.5 (38.4%)	71.8	71.8	37.7	27.7	8.4 (3.2%)	337.9	96.5	673.9	425.4

자료 : 통계청 '2010 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별첨 2>**

○ (자산별) 자산이 적은 가구의 대부분은 은퇴빈곤층이나, 자산이 많은 가구 중에서도 은퇴빈곤층이 소수 나타남

- 자산이 1 억원 미만인 가구의 대부분은 은퇴빈곤층이며, 은퇴부유층의 비중은 매우 낮음
- 자산이 1 천만원 미만인 42.4 만 가구 중 70.8%인 30.0 만 가구가 은퇴빈곤층임

- 자산이 1 천만원~1 억원인 86.8 만 가구 중에서도 은퇴빈곤층은 50.1 만 가구로 57.7%이고 은퇴부유층은 0.1 만 가구로 0.1%차지함

- 그런데 자산이 많은 가구 중에서도 은퇴빈곤층이 나타남

- 자산이 5 억원 이상인 33.5 만 가구 중, 은퇴빈곤층은 0.7 만 가구로 2.1% 차지함
- 특이한 점은 자산 5 억원 이상의 은퇴부유층의 월 소득인정액과 월 가처분소득이 각각 682.0 만원, 411.1 만원에 이르는 반면, 은퇴빈곤층은 각각 -63 만원, -197.0 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임
-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한 5 억원 이상 자산가들 대부분은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자산이 많은 것'이 은퇴부유층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님을 의미함

- 은퇴부유층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를 고려하여 자산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함을 시사함

< 자산별 분포 >

(단위: 만가구, 만원)

자산별	고령 은퇴 가구 수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가구 수	최소 생활비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 소득	가구 수	적정 생활비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 소득
1 천만원 미만	42.4	30.0 (70.8%)	57.0	62.8	30.1	29.9	-	-	-	-	-
1 억원 미만	86.8	50.1 (57.7%)	66.6	69.9	37.0	30.7	0.1 (0.1%)	1000	53.3	2719	261.5
3 억원 미만	74.9	18.7 (25.0%)	95.9	85.6	56.3	32.9	0.2 (0.3%)	3250	104.0	6131	594.0
5 억원 미만	26.7	2.0 (7.5%)	1208	96.5	56.7	8.3	0.5 (1.9%)	2267	99.6	6852	629.5
5 억원 이상	33.5	0.7 (2.1%)	1929	117.3	-63	-197.0	7.6 (22.7%)	3487	96.9	6828	411.1
합계	2643	1015 (38.4%)	71.8	71.8	37.7	27.7	8.4 (32%)	3379	96.5	6739	425.4

자료 : 통계청 '2010 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별첨 3>

○ (대출목적) 고령 은퇴가구주들은 대부분 거주 주택과 거주 이외 부동산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음. 그러나 은퇴 빈곤층은 과도한 대출로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지고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져 다시 금융 대출을 받음

- 자산 5 억원 이상의 은퇴빈곤층은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잔액이 1 억 4,285 만원으로 총 대출잔액의 52.0%이고, 생활비는 5,786 만원으로 21.1% 차지함
  - 기타 소득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원리금 과 이자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결국 생활비를 조달과 원리금과 이자 상환 목적으로 대출을 다시 받은 것임 (11 쪽 사례 1 참조)
  - 한편 자산 5 억원 이상의 은퇴부유층은 거주주택과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을 위한 대출 잔액이 각각 946 만원, 456 만원으로 59.8%, 28.7%를 차지함. 대출 규모로 보면 은퇴 부유층은 부동산을 구입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음
- 자산이 1 억~3 억원과 3 억~5 억원인 은퇴빈곤층은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잔액이 각각 630 만원, 1,000 만원으로 56.4%, 25.7%를 차지함. 또한, 의료비 조달을 위한 대출은 각각 182 만원, 433 만원으로 16.3%, 11.2%를 차지함
  - 특히 은퇴빈곤층 중 의료비 조달을 위해 1000 만원 이상을 대출한 가구가 1.0 만 가구에 이룸 (11 쪽 사례 3 참조)
  -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 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지출이 발생할 경우, 은퇴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또한 5 억미만인 은퇴 빈곤층에서는 금융대출 잔액의 42.9%인 1,667 만원을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남

<금융 대출 목적>

(단위: 만원, %)

자산규모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	-------	-------

모	계	거주주 택 마련	거주 이외	생활 비	의료 비	부채상 환	계	거 주 주 택 마 련	거 주 이 외	생활 비
1 천만원 미만	114 (100.0 )	-	-	4 (3.8)	1 (1.0)	24 (20.5)	-	-	-	
1 억원 미만	225 (100.0 )	45 (20.1)	-	24 (10.5)	8 (3.4)	18 (7.8)	-	-	-	
3 억원 미만	1,118 (100.0 )	630 (56.4)	142 (12.7)	92 (8.2)	182 (16.3)	-	10,000 (100.0 )	-	-	
5 억원 미만	3,885 (100.0 )	1,000 (25.7)	-	302 (7.8)	433 (11.2)	1,667 (42.9)	1,667 (100.0 )	-	-	
5 억원 이상	27,471 (100.0 )	-	14,285 (52.0)	5,786 (21.1)	-	257.1 (0.9)	1,582 (100.0 )	946 (59.8)	456 (28.7)	19 (1.2)
합계	759 (100.0 )	158 (20.9)	198(26.0 )	105 (13.9)	47 (6.1)	53.0 (7.0)	1,836 (100.0 )	853 (46.4)	410 (22.3)	17 (0.9)

자료 : 통계청 '2010 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2.0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7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8월 12일	8월 18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26	2.06	-0.20%p
	엔/달러	92.93	88.43	81.19	76.85	76.54	-0.31₩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225	1.4434	0.0209\$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269	10,991	-278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964	8,944	-2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49	3.56	0.07%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78.5	1,074.0	-4.5 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793.3	1,860.6	67.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8월 12일	8월 18일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5.38	82.02	-3.36\$
	Dubai	78.06	73.14	88.80	102.28	105.04	2.76\$
CRB 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26.53	326.42	-0.11p

1) CRB 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제공)